

별첨 2

디딤돌(첫걸음_경기지방청 R&D) 세부 지원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형 R&D 지원을 통해 지역별 우수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균형 성장 견인

□ 지원규모 : 총 27.3억 원, 41개 내외

구분		지원유형	접수기관	지원규모
내역사업	세부과제			
디딤돌	첫걸음_지방청 R&D	자유공모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1개 내외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기지역 소재(본사기준) 중소기업 중 업력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 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첫수행 기준 : 기업 설립일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사업 협약체결 이력이 없는 기업

□ 지원내용

- 지방청별 사업 기획을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 특성에 맞는 과제 발굴 및 적기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1년 6개월 이내, 최대 2억 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27.3억 원, 41개 내외

□ 지원대상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기소재 중소기업(본사기준)
중 ①업력 7년 이하이고, ②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이면서,
③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①, ②, ③ 모두 충족)
 - *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R&D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등 비R&D사업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업력산정 기준

- ① 업력 산정기준 :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확인
 -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의 설립등기일로 확인(법인등기부등본 제출 필수)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통주점업, 무도유통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신산업 창업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에서 정하는 신산업 창업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 업력 7년 초과 10년 이하 기업이 신산업 창업분야를 미선택하거나 선택한 신산업 창업분야와 맞지 않을 시 제외됨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에서 부담
 -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단위 : 천 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66,500	2,250	20,000	22,250	88,750
2차년도	133,500	4,500	40,000	44,500	178,000
합계	200,000	6,750	60,000	66,750	266,750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75%	2.5%	22.5%	2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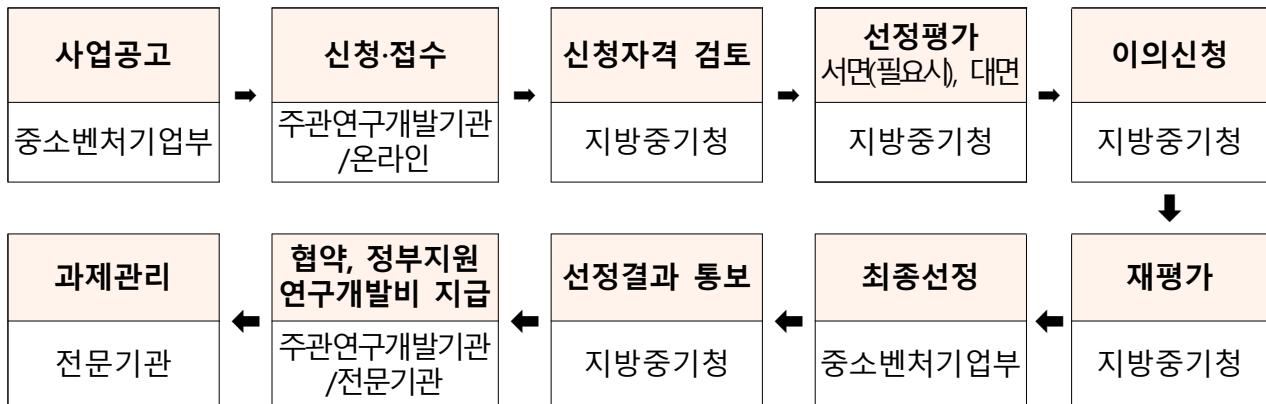
* 연구개발기간 1년 6개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억 원을 지원한 경우임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창업일이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현금 계상 가능.
단,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 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 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연구실운영비) 영리기관이 연구실운영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실운영비 활용·계획([별첨 3 작성양식 참조](#))을 제출하여 평가위원회 승인 필요
*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구실 환경유지기기 관련 비용(사무용품은 제외)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 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나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자격 검토(5월)

-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신청자격,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등 결격사유 확인
 -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별첨 1-1] 참조

□ 서면평가(5~6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자금집행계획 중심으로 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대면평가 대상과제로 추천

$$\text{종합평점} = \frac{\text{평가 점수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가 완료된 후(대면평가 종료 이후) 1회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음

□ 대면평가(6~7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기술개발보유 역량 수준, 연구윤리, 자금집행계획, 지방청 특화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통지표 항목 80점, 지방청 특화지표 항목 20점으로 평가

$$\text{종합평점} = \frac{\text{평가 점수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text{가점} - \text{감점}$$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2> 확인

< 지방청 R&D 대면평가표 >

연번	평가지표	배점
1	• 기술성	25점
2	• 사업성	15점
3	•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10점
4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15점
5	• 연구윤리	10점
6	• 지방청 특화지표	20점
7	• 자금집행 계획	5점

- (경기지방청 특화지표) 대면평가 시 평가지표(최대 20점) 적용
 - * 특화분야 적합성, 지식재산권 보유, 투자유치는 해당 시 서류 제출, 해외진출은 연구개발계획서에 해외진출 계획에 대해 기재한 내용으로 평가 예정

평가지표	배점				
• 특화분야 적합성(5점)					
- 지역특화분야*와 기술개발 아이템간의 적합성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뿌리산업 스마트혁신, 미래차, 바이오, 기후테크	5	4	3	2	1
** (해당시) <참고4> 별도 양식 제출					
• 지식재산권 보유(5점)	3점 이상	2점 이상 3점 미만	1점 이상 2점 미만	0.3점 이상 1점 미만	0점
- 개발 아이디어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기업	5	4	3	2	1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건 당 1점					
**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건 당 0.3점					
*** (해당시) 특허, 실용신안 및 출원서 제출					
• 투자유치(5점)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천만원 미만	투자유치 없음
- 개발 아이디어에 대해 투자유치 이력	5	4	3	2	1
* (해당시) 투자계약서, 입금증 및 주주명부 제출					
• 해외진출(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계획, 가능성	5	4	3	2	1
* 해외진출은 연구개발계획서에 해외진출 계획에 대해 기재한 내용으로 평가 예정					

□ 지원과제 확정(7월)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단, 상위 90%를 지원과제로 우선 선정, 이의신청 평가 후 하위 10% 과제 및 이의신청 '可' 판정 과제를 재평가하여 종합평점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7~8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3. 신청 및 접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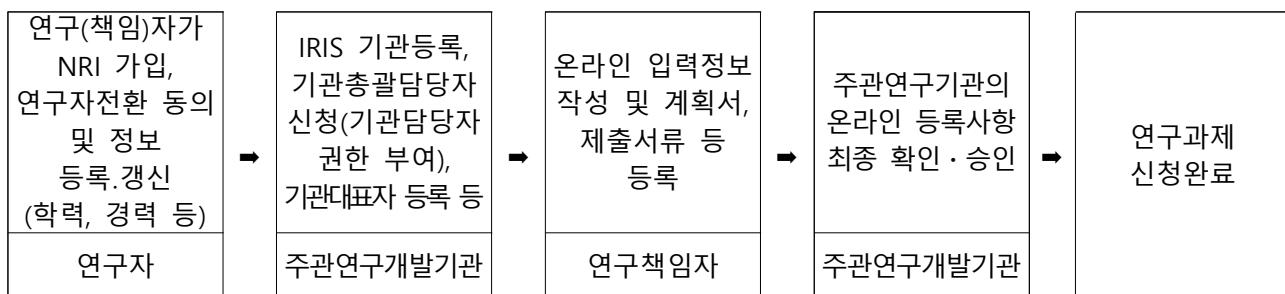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5. 4. 17.(목) ~ 2025. 5. 7.(수), 18:00까지
 - * 접수기간 내 미접수 시 지원제외 처리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 접수 마감일 18:00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시 까지만 가능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 접수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사업 세부 공고 목록 →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2025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모집공고 → 접수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구비서류 등록
- ☞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www.iris.go.kr → 로그인 → 업무포탈서비스 → R&D고객센터 → IRIS사용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_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끝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연구개발과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 불가

□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별첨 3 작성양식 참조](#))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식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3] 작성양식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5.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u>20페이지 이내</u>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본문1	○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2	○
②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④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	
⑤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⑥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연번	서식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		
⑦	아래 해당되는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주관, 공동, 위탁기관 포함)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총 사업자등록내역),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필수)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⑧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⑨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⑩	경기지방청 특화산업분야 관련 자료 제출(참고4 의 양식) * 제출 자료는 대면평가 '특화분야 적합성' 심사에 반영하기 위함 * 특화산업 분야 중 뿌리산업의 경우 추가 증빙 제출(공장등록증명서(업종 코드 확인용)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서)		○
⑪	개발 과제 관련 특허증, 실용신안, 출원서 등 지식재산권 증빙(개수 제한 없음) * 제출 자료는 대면평가 '지식재산권' 심사에 반영하기 위함		○
⑫	투자계약서 1부, 입금증 1부 및 주주명부(투자자 등재사항 확인용) - 투자계약서 : 투자당사자 정보(직인날인 포함), 투자금액, 투자일자 등 확인되어야 하며 이외 민감정보는 마스킹하여 제출 가능 * 투자계약일은 공고일까지 계약된 경우에 한하며, 입금은 접수마감일까지 된 경우에 한하고, 주주명부는 해당시 제출 ** 제출 자료를 대면평가 '투자유치' 심사에 반영하기 위함		○

4. 기타사항

-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별첨 1-2] 참조

5.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지방중기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협약, 사업비 지원, 사후관리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mss.go.kr/site/gyeonggi/main.do>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Ifqd

참고 1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지방청) R&D 세부내용(요약)

□ 사업목적

- 경기 지역특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형 R&D 지원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균형 성장 견인

□ 지원규모(신규) : 41개 과제(27.3억원) 내외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기지역 소재 중소기업(본사 기준) 중 ^①업력 7년 이하이고, ^②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이면서, ^③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①, ②, ③ 모두 충족)

□ 지원내용

내역사업	세부과제	지원기간	지원한도
디딤돌	첫걸음_지방청 R&D	최대 1년 6개월 이내	2억 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지원

□ 공고기간 : 2025. 4. 2.(수) ~ 2025. 5. 7.(수)

* 접수기간 : 2025. 4. 17.(목) ~ 2025. 5. 7.(수) 18:00까지

□ 경기지방청 특화 평가지표

○ (특화지표) 대면평가 시 평가지표(최대 20점) 적용

* 특화분야 적합성, 지식재산권, 투자유치는 해당 시 서류 제출, 해외진출은 연구개발 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평가 예정

평가지표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특화분야 적합성(5점) - 지역특화분야와 기술개발 아이템간의 적합성 * 특화분야 : 뿌리산업 스마트혁신, 미래차, 바이오, 기후테크 ** (해당시) (참고4) 특화 분야 지역 평가지표 적용 및 별도 제출 양식 제출	5	4	3	2	1
• 지식재산권 보유(5점) - 개발 아이디어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기업 * (해당시) 개발 아이디어 관련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출원서 등) 제출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건 당 1점 ***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건 당 0.3점	3점 이상	2점 이상 3점 미만	1점 이상 2점 미만	0.3점 이상 1점 미만	0점
	5	4	3	2	1
• 투자유치(5점) - 개발 아이디어에 대해 투자유치 노력 * (해당시) 투자계약서, 입금증 및 주주명부 제출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천만원 미만	투자유치 없음
	5	4	3	2	1
• 해외진출(5점) - 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계획, 가능성 * 해외진출은 연구개발계획서에 해외진출 계획에 대해 기재한 내용으로 평가 예정	5	4	3	2	1

□ 문의처 : 1357

참고 2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증빙서류)

□ 가·감점

- (가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대사항별 가점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단, 공통 가점 중 성과 창출 강화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①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공통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성과창출 강화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최종평가 결과 '우수'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 되었으나,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여 장관 포상을 받지 않은 기업 포함	2점	표창장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D 우수 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2점	표창장 등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 완료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조기 완납한 기업이 신청한 과제 * 조기완납 기준: 기술료 납부 1~3차년도 납부기한까지 기술료 상한금액을 완납한 경우 ** 단, 기술료 상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1점	조기완납기업 확인서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생태계 보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기업종 관련 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과제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 임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1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증

*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은 상기 가점 외에 선정평가시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지표" 점수를 최고점으로 부여함(단, 선행연구와 중복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동 지표 활용 여부 및 점수배점은 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음)

< ②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가점 >

연번	가점 사항	가점	확인
①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 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②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④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⑤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⑥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 * 환경부의 대체품 생산업체 현황 조사 시 서약서를 제출한 기업	1점	전문기관 확인
⑦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1점	상장사본 확인
⑧	K-뷰티 관련 제조기술 보유기업 * (기능성 원료) 피부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모발 색상변화 및 영양공급 등 ** (친환경 부자재) 화장품용 친환경 부자재(폐플라스틱 재활용, 생분해용기개발, 플라스틱 대체소재 등)	1점	세부 지원분야 부합성 검토 제출 양식 확인 <참고3> 참조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 (유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참고 3

K-뷰티 가점 신청분야 부합성 검토 제출 양식(해당시)

※ K-뷰티 가점 신청 시 지원분야 부합성 검토를 위한 상세 내용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지원분야

분야	주요내용
택1	기능성 원료 피부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염색, 모발 및 두피 건강 케어 등 기능성 화장품의 용도별 기술개발
	친환경 부자재 폐플라스틱, 생분해용기, 플라스틱 대체소재 등을 활용한 화장품용 친환경 부자재 기술개발

※ 선택한 지원 분야와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떠한 부분에서 부합되는지 설명

- 신청 과제의 기술개발 내용과 지원 분야의 부합성 위주로 작성
- “친환경 부자재”분야의 경우, ‘K-뷰티’와의 관련성 및 근거자료(기술개발의뢰서 등) 첨부 필수

참고 4

특화 분야 지역 평가지표 적용 및 별도 제출 양식(해당시)

□ 특화분야

순번	분야	개요
1	뿌리산업 스마트혁신	(뿌리산업) 제조과정에서 공정기술로 이용되며 최종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근간 산업으로, 주조 등 기반공정 6대 기술과 로봇 등 차세대 8대 공정기술로 구성 * 「뿌리산업법」 제2조 / 뿌리산업 범위는 시행령(별표2) 참조 (스마트혁신) 뿌리산업 생산성,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스마트혁신 기술개발 지원 목표 *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2025~2027, 스마트제조)
2	미래차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넘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 *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2019. 10. 관계부처 합동)
3	바이오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을 기반으로 생물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 *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2025~2027, 바이오)
4	기후테크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기술 * 탄소중립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후테크 본격 육성에 나선다(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보도자료, 23. 3. 13.)

□ 지역 평가지표

- R&D 개발 내용이 경기지역 신성장·신산업 특화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 평가지표 (최대 5점) 적용

평가지표	평가요소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지역특화 분야 적합성 (1~5)	• 기술개발 아이템, 목표 등이 지역특화 분야에 부합하는지 평가	5	4	3	2	1

□ 양식(별도 제출)

특화분야 (해당 시)

※ 선택한 특화 분야와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떠한 부분에서 부합되는지 설명 (2p까지 작성 가능)

□ 특화분야명 :

- ① 뿌리산업 스마트혁신 ② 미래차 ③ 바이오 ④ 기후테크 중 선택하여 기재

* 특화 분야 작성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별도 양식을 제출(해당 시)하는 과제에 대해 지역특화분화 적합성 심사

** 특화산업 분야 중 뿌리산업의 경우 뿌리산업 증빙도 제출(공장등록증(업종코드 확인)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서)